

『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4월 17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4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4월 26일

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김 종 울

나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, 분임기금 운용관을 추가 지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기금의 용도를 정비(안 제6조)
 - 안전점검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 항목 추가
 - 구미시 소유·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
 -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
 -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·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

-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추가
-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
-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해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 지정(안 제8조)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
 - 자연재해저감시설 → 방재시설
 - 「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」 → 「감염병」
 - 영 제74조제1호마목 → 영 제74조제8호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 장 근

○ 본 『구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“안전점검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 항목”을 추가하는 등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재정비하고,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 지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